

스쿨비전위원회 규정

제정 2017.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본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과 스쿨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스쿨비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스쿨제도의 조직과 운영, 역할에 관한 사항 논의 및 검토
2. 스쿨의 발전계획과 운영, 성과에 대한 분석 및 대학의 발전계획에 환류 관련 사항 논의
3. 대학 본부조직과 협력에 관한 논의
4. 기타 스쿨과 대학에 관계된 주요사항 논의 및 검토

제3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본 대학의 스쿨원장과 부총장, 기획실장으로 하며 간사는 기획실 팀장이 맡는다.

제4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회의록을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위원회 업무에 관계한 교직원은 위원회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의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